

보 고 사 항

□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

1. 회기결정의 건
2.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
3. 2001년도 제1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
4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
5.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6. 기타 일반안건

□ 제9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

- 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— 2001. 4. 10
(화순군의회 공고 제2001-4호)

<공고내용>

- 집회일시 : 2001. 4. 16 (月) 10:00
- 집회장소 : 화순군의회 본회의장

□ 각종 의안 발의상황 보고

- 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
 - 발의일자 : 2001. 4. 10
 - 발의자 :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외 3
 - 회기 : 2001. 4. 16. ~ 4. 23 (8일간)
-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 - 발의일자 : 2001. 4. 10
 - 발의자 :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외 3
 - 출석요구내용 : “별 침”

- 2001년도 제1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— 2001. 4. 9 군수제출
 - 제안이유
 -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제1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.
 - 주요골자
 - 예산편성규모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예산액	전년도 본예산	증 감	비 고
계	141,339	114,762	26,577	증 23.2%
일반회계	125,331	102,496	22,835	◦ 22.3%
특별회계	16,008	12,266	3,742	◦ 30.5%

- 2001년도 제1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: “별첨”
 - ※ 2001. 4. 12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회부
-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—

2001. 4. 13 의회운영위원회 제안

- 주 문

-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- 활동기간 : 2001. 4. 16 ~ 2001. 4. 23 (8일간)
- 구성인원 : 7 명

- 제안이유

-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도록 되어 있어 보다 투명하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
- 주문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도록 한 후 본회의에서 심의처리 하는 것이 회의운영에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제안함

◦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01. 3. 9

- 제출자 : 화순군수

- 제안이유

-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“농촌생활개선사업” 관련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코자 함.

- 주요골자

- 사회복지과 분장사무의 변경 (안 제3조)

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→ 삭제

※ 2001. 3. 9 총무위원회 심사회부

◦ 화순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급에 관한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01. 3. 9

- 제출자 : 화순군수

- 제안이유

- 화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- 주요골자

- 지원대상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고 화순지역까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및 가스를 공급하는 자로 함 (안 제4조)
- 지원범위는 가스본관 설치비의 일부로 함 (안 제5조)
- 보조금 교부는 사업자가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교부조건을 정하여 교부결정 (안 제6조, 제7조, 제8조)
- 보조금 지급은 공급사업 확정후 선급 또는 실적급으로 지급 (안 제9조)
- 보조금은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음 (안 제10조)
- 군수시 필요시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감독하고 필요한 처분을 함 (안 제11조)
-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교부조건 위반시 교부중지 및 교부금 반환을 명할 수 있음 (안 제12조)
-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. (안 제13조)

※ 2001. 3. 9 산업·건설위원회 심사회부

◦ 화순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01. 3. 9
- 제출자 : 화순군수
- 제안이유
 -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관내 마을순회수리 정비를 위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- 주요골자

- 농가에 보급된 농기계고장에 대한 관내마을 순회수리정비를 위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을 설치 (안 제1조)
- 고장 농기계의 순회수리와 농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현지교육 및 사용지도와 농민기술교육 병행 실시 (안 제3조2항)
- 3~10월까지는 오지마을 순회수리와 농한기는 사용전 월동기 점검지도와 내방 수리기술교육을 병행함 (안 제4조)
-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의 구입단가 범위 내에서 부속품대 징수 (안 제5조1항)
- 단종된 기종의 부품은 단종된 후 5년 경과후 사용처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자체 불용 처리함 (안 제6조2항)

※ 2001. 3. 9 산업·건설위원회 심사회부

◦ 화순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01. 3. 9
- 제출자 : 화순군수
- 제안이유
 - 첨단기술 도입과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생활환경 및 농민 의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한 화순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 관한조례는 '98. 9. 22일 조직개편으로 시범지역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본 조례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함.

- 주요골자

- 조례안 폐지

※ 2001. 3. 9 산업·위원회 심사회부

◦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01. 3. 26
- 제출자 : 조영길 의원외 3
- 제안이유
 - 화순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견의된 바 있는 국가유공자, 참전군·경에 대한 민원 수수료를 감면키 위함
(견의자 문제필 2001. 2. 27)

- 주요골자

- 제7조(수수료 감면등)의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.
4. 국가유공자, 6·25 참전군인과 경찰, 파월 참전군인이 군청과
직속기관 및 읍·면 사무소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. 다만, 당해
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.

※ 2001. 3. 28 총무위원회 심사회부

◦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
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01. 3. 29
- 제출자 : 화순군수
- 제안이유
 - 주민을 대상으로 화순군수가 발행하는 행정공보물과 간이승강장
등 각종 공공시설물에 건전한 상업광고문을 게재하여 주민에게
생활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재정 확충 등
에 이바지하고자 군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과정
에서 행정공보물 및 공공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표의 규격 및
사용료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개정코자 함.

- 주요골자

- 제3장 광고이용물 사용료 부과 및 수입금 관리
 - 제13조 (사용료 부과기준)
 - ② 사용료의 부과기준

※ 2001. 3. 29 총무위원회 심사회부

◦ 화순군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01. 3. 29
- 제출자 : 화순군수
- 제안이유
 - 군정 주요시책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 등의 지급규정이 없어 군정수행에 차질을 초래하므로 화순군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를 개정하여 보상규정을 명문화하고 군정수행에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.

- 주요골자

- 목적 : 군정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규정
- 적용 : 법령 ·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이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함.
- 대상 :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인
- 실비보상의 내용 : 운임, 일비, 숙박료, 식비 및 수당으로 구분 지급
- 실비보상 기준 : 여비 등의 보상기준 국내여비 규정 별표 1 및 별표 2 준용
- 예외 : 수당은 당해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 적용

※ 2001. 3. 29 총무위원회 심사회부

◦ 화순군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01. 3. 29

- 제출자 : 화순군수

- 제안이유

·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

- 주요골자

◦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 (안제1조)

·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◦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(안제3조)

· 홈페이지 구성내용

· 시스템 운영과 홈페이지 관리 : 기획예산실

· 자료제공 및 관리 : 분야별 담당부서

· 관리부서에서 삭제하는 경우, · 게시자료 삭제할 경우

◦ 사이버 민원실 설치 · 운영(안제8조)

◦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의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(안 제12조)

◦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참여마당 운영 (안제13조) 등

※ 2001. 3. 29 총무위원회 심사회부

◦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01. 3. 29

- 제출자 : 화순군수

- 제안이유

·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·개정됨에 따라 공중위생법의 신고에 따른 화순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사항을 폐지(삭제)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으며, 내수면어업법 및 수산업법 시행령 조문개정에 의거 내수면 및 수산업에 관한 면허·허가 등의 신청시 수수료를 군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개정됨에 따라 농수산관계란에 신설하고,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“별표 1”을 별지와 같이 제정비 수정 보완코자 함

- 주요골자

-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[별표1]의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제6호 보건사회관계 ①호텔업신고 ~ ②2 이·미용업 신고까지의 수수료액을 신고사항으로 폐지(삭제)
- ③ 컴퓨터 게임장 허가 ~ ⑧ 기타 유기장업허가(신고)사항 변경사항(신고)까지를 문화관광과 소관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제2호 문화관광계란으로 이관
- 제2호의 문화관광계란에 ④컴퓨터 게임장 허가~⑨ 기타유기장업허가(신고)사항 변경사항(신고)를 삽입하여 음반,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4항, 5항, 6항과 유원시설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~제13조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
- ⑩, ⑪, ⑫, ⑬, ⑭, ⑮, ⑯를 신고사항으로 폐지(삭제)하고 ⑯의 “위생처리용역업신고”를 “위생처리업신고”로, ⑯의 “위생처리용역업 신고사항 변경신고”를 “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”로 공중위생관리법 및 동법 부칙 제2조, 제3조의 규정에

의거 제3호 사회보건관계란에 ①②로 존치

- ⑩의 “기타위생용품업신고”를 “기타위생용품 제조업신고”로, ⑪의 “기타 위생용품업 신고사항 변경신고”를 “기타 위생용품업 제조업 변경신고”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부합되도록 제3호 사회보건관계란에 ③④로 존치
- ⑬ 세척제 제조업신고~⑭이·미용사 신규면허증 재교부까지를 제3호 사회보건관계란 ⑮세척제 제조업신고~⑯이·미용사 신규면허증 재교부까지를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대로 존치
- 제4호 농수산관계란에 ⑬내수면면허신청~⑯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청란에 신설 삽입
-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율표의 삭제로 표시된 항목을 전면수정하여 제1호 증명, 제2호 문화관광관계, 제3호 사회보건관계 제4호 농수산관계, 제5호 상공 및 등록지정관계 제6호 건설관계 제7호 기타 제증명 등으로 수정 보완 조치함

※ 2001. 3. 29 총무위원회 심사회부

◦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01. 3. 29
- 제출자 : 화순군수
- 제안이유
 - 군민의상 수상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군민의 상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
- 주요골자
 - 군민의 상 수상대상자로 추천되었으나 수상자로 결정되지 못한 자는 그후 1년간 추천 제한 단서 신설 (안 제4조)
 - 심사위원회 구성은 화순군의회 의원 5인을 포함하여 수상부문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자 중 18인 범위내로 함 (안 제5조 제2항)

- 군민의 상 부상은 금 37.5g(10돈)의 메달로 하고 그 규격과 모형을 규정함 (안 제7조 제2항)

* 2001. 3. 29 총무위원회 심사회부

◦ 화순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안

- 제출일자 : 2001. 4. 9

- 제출자 : 화순군수

- 제안이유

- 우리군 읍.면단위 소규모 비위생단순쓰레기매립장의 가용연한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보다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으로
- 집행부에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기 위하여 2001. 1. 12~2. 11(30)까지 입지후보지 공모 신청을 받은 결과 화순읍 계소리 2 구(소곡마을)가 접수되어 화순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“화순읍 계소리2구 일원”을 최종후보지로 선정함에 따라 화순군의회 의결을 거쳐 우리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를 확정코자 함

- 주요골자

< 최종 후보지 선정 개요 >

- 위치 : 화순읍 계소리2구 234번지 일원(소곡마을)
- 매립가능면적 : 35,000m² ~ 40,000m²
- 매립가능용량 : 511,000m³ ~ 600,000m³
- 사용가능연한 : 향후 약 20년정도
- 토지이용실태 : 임야, 구거, 담

* 2001. 4. 12 총무위원회 심사회부

◦ 화순군조례 · 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01. 4. 9

- 제출자 : 화순군수

- 제안이유

· 자치법규의 공포에 관한 사항만 규정된 조례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규칙안의 입법예고 및 공포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- 주요골자

·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 : 10일 이상

· 입법예고 기간 : 20일 이상

· 입법예고 방법 : 공고에 게재 - 신문, 방송, 컴퓨터 통신도 가능

· 입자치법규의 정비, 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 제출 : 누구나 가능

·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 및 관련자료에 대한 열람, 복사요청 :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

· 자치법규의 공포 번호 부여 : 누년 일련번호 부여

·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시행일 :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※ 2001. 4. 12 총무위원회 심사회부

◦ 화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01. 4. 9

- 제출자 : 화순군수

- 제안이유

·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 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 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함.

- 주요골자

◦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례 제10조 3호중

· 임대주택 “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” 를 전용면적 “85제곱미터 이하”로 감면범위 확대

※ 2001. 4. 12 총무위원회 심사회부